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2. 24 선고 2024가단1070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 2024. 12. 10.

판결 선고 2024. 12. 2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9.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9. 4. 접수 제801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망 D는 2007. 3.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카단1183호로 청구금액 4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차전7917호로 망 D의 C에 대한 4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 중 원고의 상속지분 2/9에 해당하는 8,888,888원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2. 27.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8,888,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0. 1. 18. 확정되었다.

다. C는 2023. 9.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3. 9.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C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C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망 D가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가압류만으로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9. 4. 접수 제801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장영채

별지